

어업면허신청서 (제5조제1항 관련)						처리기간
						시·군·구 7일
신청인	① 성명			② 주민등록번호	-	
	③ 주소	시·도 시·군·구 읍·면·동 리·동 번지				
고유신청인의 분	④ 성명					
	⑤ 주민등록번호	-	-	-	-	-
	⑥ 지분					
⑦ 어업의 종류		⑧ 수면의 번호		⑨ 신청면적		ha
⑩ 양식방법·양식시설량		⑪ 포획물·채취물 또는 양식물				
⑫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		시·도 시·군·구 읍·면·동 리·동 번지인점 (별지도면과 같음)				
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어선		⑬ 어선명	⑭ 어선번호	⑮ 톤수	⑯ 기관의 마력	
⑰ 어업의 시기		. . .부터 . . .까지 ()월				
⑱ 면허를 받고자 하는 기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
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신청합니다.						수수료
						1,600원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

구비서류

- 1.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
- 2.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. 다만, 현재의 어업권자 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1부

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

